

「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제2조(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(별지 제1호서식의 겹지 및 을지를 말하 며, 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에 다음 각 호 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조회사의 성분표, 제조사양 설명서 등</p> <p>3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2조(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성분표, <u>제조공정도</u> 및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사전심사 제출서류 명확화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관세 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이용 할 수 있다.</p> <p>⑤ 사전심사신청의 효력은 품목분류-분 석정보시스템에서 접수번호가 부여된 시 점부터 발생한다.</p> <p>제3조(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 (별지 제3호서식의 겹지 및 을지를 말하며, 이하 “재심사신청서”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 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	<p>④ 사전심사는 전자통관시스템(UNI-PA SS)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⑤ 사전심사 신청의 효력은 전자통관시스 템(UNI-PASS)에 등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.</p> <p>제3조(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다만, 제1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 이 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다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조문 정비</p> <p>○ 용어 현행화 및 조문 정비</p> <p>○ 재심사 신청시 제출 서류 의무규정 완화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<u>시험분석</u>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8조(처리기간) 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. 다만,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한다. <후단 신설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제9조제5항에 따른 품목번호 6단위 소호 회신 요청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<u>시험·분석 등</u>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처리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며,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속심사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</u></p>	<p>○ 용어 수정</p> <p>○ 「신속심사요청서」 서식(별지1호2) 신설</p> <p>○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②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</p> <p>2. <u>실험, 분석 또는 검사</u>에 소요되는 기간</p> <p>3. <u>외국기관(세계관세기구) 또는 재외공관에 조회</u>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</p> <p>4. <삭제></p> <p>5.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(이하 “분류위원회”라 한다) 또는 「<u>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</u>」 제7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(이하 “분류협의회”라 한다)에 부치기로 한 날부터 그</p>	<p>② <u>사전심사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<조문 정비></u></p> <p>2.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</p> <p>3. 제7조에 따른 <u>시험·분석 등</u>에 소요되는 기간</p> <p>4. <u>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<용어 수정></u></p> <p>5. <u>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<신설></u></p>	<p>○ 용어 정비</p> <p>○ 관세법 시행령(§106 ④) 개정사항 반영 및 전체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결정을 받은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</p> <p>6. <u>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<삭제></u></p> <p>7. <u>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<삭제></u></p> <p>③ <u>분류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9조(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통지는 전자메일 등 인터넷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FAX,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6. <u>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<신설></u></p> <p>7. <u>협의회 등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<조문정비></u></p> <p>③ ----- 제2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FAX,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○ 조문 정비</p> <p>○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같은 물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<u>세관분석실에 의뢰하여야 한다.</u>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10조(품목분류의 고시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<u>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(www.customs.go.kr)</u>에 공개하는 것으로 <u>같음한다.</u></u></p> <p>③ <u>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<u>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, <u>분류협의회 또는 분류위원회</u>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</u></u>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세관 분석실 또는 분석관, 심사과(평택직할)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품목분류의 고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관세법령정보포털(세계HS)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협의회 또는 위원회</u>-----</p>	<p>○ 직제개편 반영</p> <p>○ 용어 현행화</p> <p>○ 약어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.</p> <p>④ 삭제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<p>제12조(전산수정등록)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고시 또는 통지한 경우 그 내용을 품목분류-분석정보시스템에 수정등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</p> <p>----.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전산수정등록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-----</p> <p>-----</p> <p>제14조(재검토기한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2023년 7월 1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<p>○ 용어 현행화</p> <p>○ 재검토기한 수정</p>

[별지 제1호서식 - 감지]

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		처리기한 15일/30일
① 신청인 구분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 제조자	② 수출입 구분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	
신 청 인 ③ 회사(업체)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 ⑥ 담당자성명 ⑦ 휴대전화번호 ⑧ 전자 메 일	⑧ 대표자 성명 ⑨ 관세사 부호 ⑩ 전 화 번 호 ⑪ FAX 번 호 ⑫ 지리과정수신방법 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과 SMS <input type="checkbox"/> 통보안함	
수 출 입 자 등 ⑬ 수출입업체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홈 페이지 ⑯ 주 소 ⑰ 해외 거래처	⑱ 담당자 성명 ⑲ 전 화 번 호 ⑳ 전자 메 일 ㉑ 상 호 ㉒ 홈페이지	
신 장 물 품 ㉓ 품 명 ㉔ 규 격 ㉕ 원 산 지 ㉖ 물 품 설 명 ㉗ 검 토 품 목 번 호	㉘ 거 래 가 격 ㉙ 물품설명서(별지 제1호서식의 읍지)에 기재 ㉚ 통관예정 세관	
기 타 ㉛ 신청 사유 ㉜ 신속심사요청사유 ㉝ 수출입신고이력 ㉞ 견본제출여부 ㉟ 결과 비공개 (제10조제1항 제1호에 한함) ㊱ 수 수 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율·세액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환급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요건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원산지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6단위 소호확인(수입/수출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확인 요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신고 압박물품 <input type="checkbox"/>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※ 사유해당시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유 (신고세면 :)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견본반환 <input type="checkbox"/> 반환불요 <input type="checkbox"/> 반환요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유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·개획단계물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분·제조비법 물품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 내용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품목당 ₩30,000(분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)	
「관세법」 제86조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.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신청인 (년 월 일) (서명 또는 인)		
* 필수 구비서류 1.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(견본 미제출 시 대체사진 3점) 2. 제조회사의 성분표(분석물품에 한함),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1부. 3. 품목설명서 - 별지 제1호서식 읍지		
* 유의사항 1. 범직조사나 불법(과세전적부상, 심사청구, 심판청구)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2.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의거 결정되므로, 적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품목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, 신청서에 주요한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3. 품목분류 심사과정에서 품목 상세정보 등 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와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,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. 4. 품목분류 확인 과정 중에 불기피한 경우 귀사에서 제출한 견본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치하시기 바랍니다. 5. 신청서는 1품목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6. 수출입 임박, 막대한 경제적 피해 예상 등 신속한 품목분류사전심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시 사유기재와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제출하시면 사전심사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. 7. 관세환급 사유인 경우 세관에서 등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		

신속심사요청서

① 기본정보

- 신청인 : (연락처 :)
- 수출입자 : (연락처 :)
- 신청물품 :
- 통관(예정)지 세관 :

② 법적근거

- 「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8조 제1항

제8조(처리기간)

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. 다만,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한다.

- 1.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
- 2.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
- 3.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
- 4.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

③ 신속심사 신청사유 (뒷장 예시와 같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 바람)

④ 증빙자료 : [1호] 세관 자료제출 요구서 1부, [2호] 사전심사대상품목, B/L 등, [3호] 경정청구서(法 제38조의3 제2항) 및 수입신고필증 등, [4호] 수출계약서 등

[작성요령]

- ① 신청인구분 : 수출입자 또는 관세사(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포함), 수출 제조자
- ② 수출입구분 : 수출 또는 수입
- ③ 회사(업체)명 :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업체명,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
- ④ 대표자성명 : 신청인이 수출입자는 대표자명, 관세사 등은 관세사명
- ⑤ 사업자등록번호 :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관세사 부호
- ⑥ 관세사부호 : 관세사부호 기재
- ⑦ 주소 : 회사(업체)명의 우편번호 및 주소 기재
- ⑧ 담당자 성명 : 회사(업체)명의 소속 담당자
- ⑨ 전화번호 : 회사(업체)명의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
- ⑩ 휴대폰번호 : 회사(업체)명의 소속 담당자 휴대폰번호
- ⑪ FAX번호 : 회사(업체)명의 소속 담당자 FAX번호
- ⑫ 전자메일 : 회사(업체)명의 소속 담당자의 전자메일
-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: 처리과정 수신 희망하는 경우 기재
- ⑭ 수출입업체명 :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
- ⑮ 담당자성명 : 신청물품의 수출입 담당자 성명
- ⑯ 사업자등록번호 :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
- ⑰ 전화번호 :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화번호
- ⑱ 홈페이지 :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 홈페이지
- ⑲ 전자메일 :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 담당자의 전자메일
- ⑳ 주소 : 신청물품의 수출입업체명의 주소 기재
- ㉑ 해외거래처 상호 : 해외거래처의 상호
- ㉒ 해외거래처 홈페이지 : 해외거래처의 홈페이지
- ㉓ 품명 :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
- ㉔ 모델 :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
- ㉕ 규격 : 해당 품목의 세부 규격
- ㉖ 원산지 : 신청물품의 원산지 기재
- ㉗ 거래가격 : 신청물품의 거래 가격
- ㉘ 물품설명 : 물품설명서(별지 제1호서식의 을지)
- ㉙ 검토 품목번호 : 신청인의 검토세번(없는 경우 0000.00-0000 기재)
- ㉚ 통관예정 세관 : 신청물품의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
- ㉛ 신청사유 : 세율·세액 확인, 관세환급, 수출입요건 확인, 원산지 확인, 6단위 소호확인, 기타() 선택
- ㉜ 신속심사요청사유 :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확인 요청, 수출입신고 임박물품,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,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(* 사유해당시 별지 제1호의2 제출 필수)
- ㉝ 수출입 신고이력 : 유, 무 선택(유 선택시 신고세번 기재)
- ㉞ 건본제출여부 : 제출, 미제출 선택
- ㉟ 건본반환 : 신청시 제출한 건본의 반환여부 선택
- ㊱ 건본 미제출사유 : 미제출 사유 및 칼라사진 3매 제출
- ㊲ 결과 비공개 : 비공개 사유(① 신규, 계획단계물품, ② 성분비율, 제조비법이 있는 물품, ③ 기타 비공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물품)를 체크하고, 해당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
- ㊳ 수수료 : 품목당 ₩30,000(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)

[③번 신청사유 작성 예시]

- [1호-예시] 당사가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○○세관에서 FTA 원산지 충족여부를 심사 중에 있으며, 세관에서 관련 확인 자료 등을 요구하여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.
- [2호-예시] 당사가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사전세액심사대상(法 제38조 제2항 단서, 규칙 제8조) 물품이나 부득이하게 15일 이내 입항이 예정되어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.
- [3호-예시] 당사는 과거 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등을 이유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○○세관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이에 ○○세관은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, 수입한 물품 중 경정청구 기한이 곧(3개월 이내) 도래되는 물품이 있어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과를 회신받고자 합니다.
- [4호-예시] 수출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(또는 수출하는 업체)로, FTA 활용 등을 위한 원산지확인서(또는 원산지증명서)를 발급하고자 신청물품에 대한 6단위 세번 확인을 요청하오니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

관세평가분류원



수신자 (경유)

제목 **품목분류 사전심사(재심사) 회신(보고·통보)**

OOO가 20 년 월 일 품목분류 사전심사(재심사) 신청한 건(품명: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(보고·통보)합니다.

아 래

1. 신청 사항

- 신청인 성명 :
- 신청인 상호 :
- 신청인 주소 :
- 수출입자 상호 :
- 통관예정지 세관 :

2. 물품 설명

- 품명·모델·규격
- 물품 설명

3. 결정 내용

- 품목번호
- 분류 이유

※ 유의사항

1. 상기 **품목분류번호**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.
2.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.
3. **회신된 품목분류번호에 대한 수출입통관 요건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4. 공표되지 않은 품목분류의 경우 법 제86조제5항2호나목2)단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이 결정에 이의제기 할 때에는 관세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이 회신(통보)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평가분류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관세평가분류원장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 서명	결재권자	직위(직급) 서명
협조자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 (시행일자)	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 (접수일자)	
우 00000	(주소)			/ 홈페이지 주소	
전화 000-000-0000	전송 000-000-0000	/	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서				처리기한 60일
① 신청인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 제조자	② 수출입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	
신청인	③ 회사(업체)명	④ 대표자성명		
	⑤ 사업자등록번호	⑥ 관세사부호		
	⑦ 주소 우)□□□-□□□	⑨ 전화번호		
	⑧ 담당자성명	⑩ FAX 번호		
	⑪ 휴대폰번호	⑫ 전자메일	⑬ 처리과정수신방법 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과 SMS <input type="checkbox"/> 통보안함	
수출입업체	⑭ 수출입업체명	⑮ 담당자성명		
	⑯ 사업자등록번호	⑰ 전화번호		
	⑰ 홈페이지	⑱ 전자메일		
	⑲ 주소 우)□□□-□□□			
신청물품	⑲ 품명			
	⑳ 모델			
	㉑ 규격			
	㉒ 원산지	㉓ 통관 예정세관		
	㉔ 검토 품목번호	㉕ 결정 품목번호		
	㉖ 문서번호	㉗ 결정일자		
	㉘ 물품설명	물품설명서(별지 제3호서식의 을지)에 기재		
기타	㉙ 건본제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제출	㉚ 건본반환 <input type="checkbox"/> 반환불요 <input type="checkbox"/> 반환요 ㉛ 사유	
	㉜ 결과 비공개 (제10조제1항 제1호에 한함)	사유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·계획단계물품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분·제조비법 물품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		
		내용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		
	㉝ 수수료	품목당 ₩30,000(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)		
	㉞ 재심사 신청 요지 및 이유	* 재심사 신청 이유를 기재 또는 첨부(제출)하실 수 있습니다.		
「관세법」 제86조제3항 또는 제87조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년 월 일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div>				
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				
※ 필수 구비서류 1. 신청대상 물품의 건본 1점(건본 미제출 시 대체사진 3장) 2. 제조회사의 성분표(분석물품에 한함),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1부. 3. 물품설명서 - 별지 제3호서식 을지 4. 사전심사서 또는 품목분류 변경 통지서 사본 1부. ※ 2,3번의 경우 당초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다면 생략가능함				